

< 3.23(수) 조간 (인터넷 3.22(화) 12:00이후) >



보 도 자 료

▶ 근로복지과 과장 하형소
사무관 손재형

▶ 2011. 3. 22 (화) 배포
▶ 총 8 쪽

TEL : 02)2110-7419, 010-8291-0000
E-MAIL : sonjaehyeong@moel.go.kr
F A X : 02) 507 - 170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갈수록 증가

- 근로복지공단,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
가입 사업장 1천개 돌파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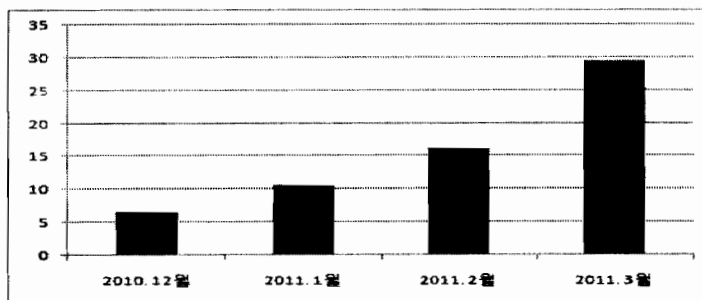
-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(연금)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*를 실시한 결과, 4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1,000호점을 돌파하였다.

* 퇴직연금 공적서비스: 고용보험,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를 단순화 하고,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

- 2011년 3월 18일 현재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1,029개소, 근로자수 2,154명으로 공단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개시한 이래 퇴직연금 월별 1일평균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수가 눈에 띄게 증가 추세에 있다.

< 월별 1일 평균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수 >

(단위 : 건수)



- 특히,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실적은 2010.12월에는 일평균 5개 내외 사업장이 가입을 했으나, 최근(2010. 3월)에는 일평균 30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.
-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,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을 돌파 (2011년 1월 기준) 했고,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 비율은 49.9%에 이른다.
- 그러나, 4인 이하 사업장은 2.8%(총 910,467개소 중 25,916개소 도입)에 불과하다.
-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이 영세성과 잦은 생성·소멸로 체불사건 발생 빈도가 많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- 이런 점을 감안,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하였다.
-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적립금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,
- 공단에서는 이를 집합적으로 운용하므로 높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.

【공단과 타기관 수수료 및 수익률 비교】

구분		퇴직연금사업자		근로복지공단
		A은행	B보험사	
수수료	DC	0.8(운용관리0.5 +자산관리0.3)%	1.0(운용관리0.6 +자산관리0.4)%	0.6(운용관리0.3 +자산관리0.3)%
	IRA	1.2(운용관리0.7 +자산관리0.5)%	1.0(운용관리0.6 +자산관리0.4)%	0.5(운용관리0.2 +자산관리0.3)%
원리금보장상품 공시 이율		4%	3.8%	4.8%(보험)

- 따라서 공단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산 되면, 불필요한 범법자(체불사업자) 양산을 막고 퇴직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줄어든 것이다.

- 또한,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“퇴직연금이 4인이하 사업장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도입됐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” 라고 전하면서
- “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퇴직연금이 더 많은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

< 문 의 >

-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: 손재형 사무관
- 핸드폰: 010-8291-0000

I. 추진 배경

○ '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 위주 퇴직연금 시장 성장

- 제도 도입 후 5년이 경과하여 '11. 1월 기준 누적적립금이 30조 돌파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비율은 49.9%인데 반해, 4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2.8%(총 910,467개소 중 25,916개소 도입)에 불과

* 전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6.7%(142,000개소 중 96,000개소 도입), 전체 상용근로자의 27.4%(8,740,854명 중 2,393,934명 가입)

○ '10. 12. 1.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

- 4인 이하 사업장 영세근로자는 낮은 공적연금 적용율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절실함에도,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임금지급능력 및 근로감독능력의 한계 등의 사유로 적용이 유예되어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

* 4인 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율 : 59.3%, 월평균 임금 1,265천원(전체 근로자 86.8%, 1,945천원)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('08년) 참조

- '10. 6. 23. 근퇴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(연금)제도를 '10년 12월부터 확대·적용함으로써 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 대상이 됨

○ 근로복지공단 4인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

-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잦은 생성·소멸로 다수의 체불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,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영세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
- 따라서, 4인 이하 사업장의 제도 연착륙,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강화 및 체불방지를 위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'10. 12. 1. 퇴직연금사업 개시
-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용이한 바, 퇴직연금은 용시스템을 이와 결합시켜 효율화를 추진

II. 추진 경과

- '09. 9월 공단은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공포('10. 9. 29.)
- 자산운용기관 선정 및 MOU 체결: 삼성화재보험, 우리은행
-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증 발급('10. 11. 26.)
- 퇴직연금 사업 개시('10. 12. 1.)

III. 주요 추진실적

1] 고객중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

○ 퇴직연금 도입단계 단순화

- 민간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필요서류가 15~20종에 이르나, 공단에서는 이를 단순화(필요서류 3종), 퇴직연금 규약신고 대행

○ 공익성 추구로 가입자의 이익 최우선

- 민간퇴직연금사업자와 달리 공단의 사업목적은 공익성 추구로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

○ 공단의 집합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

-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나, 공단에서는 이를 집합적으로 운용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낮은 수수료와 높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

【공단과 타기관 수수료 및 수익률 비교】

구분		퇴직연금사업자		근로복지공단
		A은행	B보험사	
수수료	DC	0.8(운용관리0.5 +자산관리0.3)%	1.0(운용관리0.6 +자산관리0.4)%	0.6(운용관리0.3 +자산관리0.3)%
	IRA	1.2(운용관리0.7 +자산관리0.5)%	1.0(운용관리0.6 +자산관리0.4)%	1.0(운용관리0.2 +자산관리0.3)%
원리금보장상품 공시 이율		4%	3.8%	4.9%(보험)

IV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

○ 소규모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

- 체불율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가입 확산으로 불필요한 범법자(체납사업자)의 양산 방지 및 퇴직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억제

* '10년 4인 이하 체불사업장(54,747개소)은 전체 체불사업장의 51.4%, 체불액(251,030백만원)은 전체 체불액의 21.5%에 해당됨.

○ 근로자의 이직률 저하 및 기업의 생산성 증대

-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

* '09년 4인 이하 사업장의 근속연수 2.6년, 전체근로자의 근속연수 4.5년

○ 집합적 운용 등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맞춤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

- 다수의 영세사업장이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, 영업, 마케팅 비용절약으로 민간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하여 낮은 수수료 체계 가능
- 민간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상품위주로 금융상품 라인업을 하고 있으나, 공단에서는 공정한 전문가와 위원회를 통하여 맞춤형 퇴직연금 상품 포트폴리오 제시 가능

IV. **향후발전방안**

○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프로세스 개선

- 잦은 이직 및 정년퇴직 이전 퇴직하는 경우, 적립된 연금자금이 노후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의 통산성을 확보
-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대부분 월납인 점을 감안,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부담금 자동이체시스템 도입

○ 자영업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도입

- 근로자와 똑같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자(화물기사, 택배원, 학습지교사, 보험설계사, 방송작가 등)까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노후재원 축적 유도